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50
------	------

2017. 6. 19.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6월 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6월 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7. 6. 1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장혁재)

- 신규 위임사무를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금지 처분사무를 구청장에게 새롭게 위임하고,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치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금지 처분사무 위임(안 별표)

- 안 별표는 현재 서울시(이하 “시”) 택시물류과가 수행중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처분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신규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¹⁾는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유상으로 운송업무에 제공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의 사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 제56조의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규정하고 있음.

- 시는 이미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임대허가,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업무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처분 업무를 이들과 분리해 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음.
- 해당업무의 자치구 위임과 관련한 시의 승인요청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승인없이 시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해당 사무를 직접 수행하게 될 자치구에 대한 의견조회에서도 25개 자치구 전부 “의견없음”이라고 통보해 와 해당사무의 위임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비롯해 이와 관련된 사무 중 상당수가 이미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상황에서 이와 밀접히 관련된 사무를 추가로 위임하는 것은 시민들의 혼란을 막고 행정처리의 효율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 제한 및 금지처분 사무가 자치구별로 연 10회 미만밖에 발생하지 않아 자치구에 인력이나 재정상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권한 이관에 따른 위임 법령 변경 등(안 별표)

-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각종 위임사무에 인용되고 있는 인용조문의 변경과 권한 이관에 따른 위임 법령 변경, 위임사무 삭제와 용어 변경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위임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 우선,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조항과 법제명이 변경된 일부 사무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인용 법제명 및 조항 변경〉

주관부서	사 무 명	개 정 내 용
녹색에너지과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가. 보고·검사 또는 질문 나. 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법19조, 같은 법 시행령 8조, 9조 →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3 → 법 제42조,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3
건설안전과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2항 → 제4항
공동주택과	1.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 취소 등 2. 관리자의 지정·보고, 관리자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4.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주택법」 제16조 → 제15조, 제16조 「주택법」 제24조 → 제43조, 제44조 「주택법」 제91조 → 제94조
민생경제과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관한 사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제32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 제33조

기후변화대응과	<p>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p> <p>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p> <p>다. 과태료처분 통지 등 부과 및 징수</p>	<p>「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실내공기질법)제13조 및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제12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실내공기질법’이라 한다) 제13조</p> <p>실내공기질법 제16조제3항 및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4조 → 실내공기질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p>
주택정책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p>「임대주택법」 제14조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p>

- 또한, 권한이관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위임사무 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필요조치의 명령, 개선기간의 연장 등 사무가 시장에서 구청장의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였고, 권한이관에 따른 위임법령의 변경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권한이관에 따른 위임법령 변경 사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개 정 내 용
민생경제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관한 사무 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6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2조
버스정책과	1. 차량의 연장(차량연장에 관한 고시는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신설
택시물류과	4.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을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외)	여객자동차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삭제

- 이 밖에 상위법령 삭제와 위임법령 변경, 위임사무 용어 변경에 따라서 조례의 조항도 이에 맞도록 정비하였음.

〈상위법령 삭제 및 위임법령 변경 사무 등〉

주관부서	사 무 명	개 정 내 용
보건의료정책과	5. 의료법인에 관한 사무 차. 청산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의료법 시행규칙」 제59조 → 삭제
하천관리과	1. 국가하천 및 청계천 제외지를 제외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서. 허가수수료의 징수·감면	「하천법」 제89조 → 삭제
공동주택과	3.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무 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주택법」 제56조제1항,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주택법」 제57조제1항7 →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

- 위임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권한이관에 따른 위임법령의 변경, 용어의 변경 등은 사소하지만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혼란을 막아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별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여성가족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족담당관	1.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제15조	구청장
	2.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아동복지법」 제56조	구청장

일자리노동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회적경제담당관	1.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		구청장
	가. 설립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나. 정관변경 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다. 합병 및 분할 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라. 해산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바. 신고확인증 발급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	

기획조정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직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2항 및 제5항	서울시립대학교총장

경제진흥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경제정책과	1.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다만, 서울시가 직접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는 제외)</p> <p>가.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및 고시</p> <p>다. 개발토지의 양수 및 가격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p> <p>라. 공동부담금의 승인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라목까지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 산업집적법 제33조 ○ 산업집적법 제36조 ○ 산업집적법 제37조제2항 	
문화융합경제과	<p>1.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신고·변경신고 및 신고증의 교부</p> <p>나. 폐업 신고 및 직권말소</p> <p>다.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영업의 정지</p> <p>라. 폐쇄 및 수거</p> <p>마. 청 문</p> <p>바. 수수료</p> <p>사. 과태료의 부과·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사목까지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0조, 제21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사목까지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0조, 제11조 ○ 음악산업법 제24조,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 음악산업법 제27조,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 음악산업법 제29조 ○ 음악산업법 제30조 ○ 음악산업법 제31조 ○ 음악산업법 제36조, 음악산업법 시행령 제17조 	구청장
민생경제과	<p>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p> <p>가. 폐업 등의 명령·직권말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 제5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	구청장
	다. 부정 계량기의 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	구청장
	라. 과징금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제4항	구청장
	마. 지위승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구청장
	바. 청 문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6조	구청장
	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구청장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공산품의 개선, 수거, 파기명령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나. 공산품의 보고 및 검사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3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34조	구청장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43조	구청장
	4.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5. 대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 변경등록 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목까지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5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정책과	1.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손실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도시철도법」 제9조	구청장
버스정책과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 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신청 접수·수리 나. 마을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또는 신고의 접수·수리 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 적합여부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라.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증의 교부 및 등록대장의 작성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 제1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32조	구청장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 등 신고접수·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5조	구청장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9조	구청장
	4.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9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1조	구청장
	5.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과(마을버스 노선연장·변경에 관한 사무는 제외) 사업개선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23조	구청장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 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3조	구청장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및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구청장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법인 합병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11. 차령의 연장 (차령연장에 관한 고시는 제외)</p> <p>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또는 면허의 취소(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p> <p>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 위반 내용란 중 제9호, 제10호가목,나목, 제15호가목,나목, 제16호나목, 제24호라목마목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p> <p>15.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노선폐지·감차 등을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p> <p>16.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p>	<p>○ 여객자동차법 제15조</p> <p>○ 여객자동차법 제16조</p> <p>○ 「여객자동차법」 제8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p> <p>○ 여객자동차법 제85조</p> <p>○ 여객자동차법 제85조</p> <p>○ 여객자동차법 제85조</p> <p>○ 여객자동차법 제85조</p> <p>○ 여객자동차법 제85조</p> <p>○ 여객자동차법 제88조, 제94조</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택시물류과	<p>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 수리</p> <p>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반환</p>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9조</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받은 운송사업자의 당해 자동차에 대한 봉인</p> <p>2.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그 멸실된 경우의 조치와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 신청의 처리</p> <p>나. 자동차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재교부</p> <p>다. 등록의 거부</p> <p>라.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의 부착 및 떼는 허가</p> <p>마. 변경등록의 처리</p> <p>바. 이전등록의 처리</p> <p>사.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및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반납 등의 처리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p> <p>아. 직권에 의한 자동차 말소 등록, 직권말소시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자동차 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영치 또는 폐기</p> <p>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말소 등록을 신청한 자의 수출이행여부 신고수리 처리</p> <p>차. 압류등록의 처리</p> <p>카.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부여</p> <p>타.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회수</p> <p>파.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p> <p>3.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p>	<p>○ 「자동차관리법」 제7조</p> <p>○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8조제2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4조제2항</p> <p>○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6항</p> <p>○ 「자동차관리법」 제10조</p> <p>○ 「자동차관리법」 제11조</p> <p>○ 「자동차관리법」 제12조</p> <p>○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p> <p>○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6항</p> <p>○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p> <p>○ 「자동차관리법」 제14조</p> <p>○ 「자동차관리법」 제16조</p> <p>○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항·제4항</p> <p>○ 「자동차관리법」 제28조</p> <p>○ 여객자동차법 제89조</p>	<p>구청장</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4. 일반·개인 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보고, 명령, 검사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79조	구청장
	5. 자동차관리업무의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시 사무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2조	구청장
	6.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3조	구청장
	7.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수수료의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7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제3호	구청장
	8. 청문(시 사무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4호	구청장
	9.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5호	구청장
	10. 자동차 검사 기간의 조정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구청장
	11. 무등록자동차 관리사업 영업행위 단속 (단,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단속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	구청장
	12.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16호까지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5조	
	나. 임대허가	○ 화물자동차법 제56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16호까지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다.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 화물자동차법 제56조,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라.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처분	○ 화물자동차법 제56조의2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1조	구청장
	1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7조	구청장
	15.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구청장
	16.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5,000대 미만업체)		구청장
	가. 등록	○ 여객자동차법 제28조	
	나. 등록의 취소 등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다.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 여객자동차법 제35조	
	라. 자동차 대여약관의 신고 등	○ 여객자동차법 제31조	
	마. 사업개선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33조	
	바.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 여객자동차법 제32조	
	사. 법인의 합병인가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35조	
	아. 양도·양수의 신고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35조	
	자. 상속의 신고	○ 여객자동차법 제15조, 제35조	
	차. 청문	○ 여객자동차법 제86조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88조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94조	
	파. 휴업·폐업의 신고	○ 여객자동차법 16조제2항, 제35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하. 보고·검사 등	○ 여객자동차법 제79조	
주차계획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 및 공사 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나. 터미널공사 완료시의 시설 확인 다. 터미널 사용개시기간의 지정 라. 터미널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 및 터미널의 유지·관리에 대한 시정 명령 마.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인가(위치 및 규모의 변경에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바.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사 목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 다) 제38조제1항 및 제3항 ○ 여객자동차법 제38조제4항 ○ 여객자동차법 제39조 ○ 여객자동차법 제42조제3항 ○ 여객자동차법 제43조제1항 ○ 여객자동차법 제45조제1항 ○ 여객자동차법 제94조제2항제9호	구청장 구청장
교통운영과	1.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가.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나. 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등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 「도로법」 제55조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교통지도과	1. 자치구 관할구역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주 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 ○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구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문화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	-------	------	------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p>1.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p> <p>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무</p> <p>가.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p> <p>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p> <p>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p>	<p>○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2호까지 '전통사찰법'이라 한다) 제4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2호까지 '전통사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p> <p>○ 전통사찰법 제9조, 제9조의2, 전통사찰법 시행령 제13조</p>	<p>구청장</p> <p>구청장</p>
문화예술과	<p>1.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잡지의 등록 및 변경 등록</p> <p>나. 폐업 및 직권 말소</p> <p>다. 등록 및 폐업신고 내용의 보고</p> <p>라. 외국자금의 출자 서류제출</p> <p>마. 영업의 승계신고</p> <p>바. 최초 간행물의 제출</p> <p>사.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 명령 등</p> <p>아. 직권취소</p> <p>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차. 청문의 실시</p> <p>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카목까지 '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15조</p> <p>○ 정기간행물법 제17조</p> <p>○ 정기간행물법 제18조</p> <p>○ 정기간행물법 제21조</p> <p>○ 정기간행물법 제22조</p> <p>○ 정기간행물법 제23조</p> <p>○ 정기간행물법 제24조</p> <p>○ 정기간행물법 제25조</p> <p>○ 정기간행물법 제26조</p> <p>○ 정기간행물법 제27조</p> <p>○ 정기간행물법 제33조</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제외)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등록 및 변경등록</p> <p>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p> <p>다. 과징금 부과 징수</p> <p>라. 보고 및 검사</p> <p>마. 청 문</p> <p>바. 과태료 부과 징수</p> <p>4.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 말소 또는 시공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p> <p>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p> <p>다. 에너지관리 대상자,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p> <p>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p> <p>(1) 제31조제1항·제39조제7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p> <p>(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p> <p>(3)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p> <p>5.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 명령</p> <p>6.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 석유사업법 제33조</p> <p>○ 석유사업법 제34조</p> <p>○ 석유사업법 제35조제1항</p> <p>○ 석유사업법 제38조제1항</p> <p>○ 석유사업법 제40조</p> <p>○ 석유사업법 제49조</p> <p>○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 제38조</p> <p>○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p> <p>○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p> <p>○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9호, 제9의4호 및 제5항</p> <p>○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2호, 제5항</p> <p>○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p> <p>○ 「전기사업법」 제71조</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신고필증 발급 다.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1항제3호, 제2항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3항 ○ 「전기사업법」 제73조의6 	
	7. 일반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기술수준에의 적합 명령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업법」 제71조 ○ 「전기사업법」 제108조 	구청장
	8.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시정명령 등 나. 영업정지(세금체납에 따른 영업정지 포함)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다.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 요구에 대한 조치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공사업법」 제27조 ○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 「전기공사업법」 제29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 	구청장
	9.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제9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구청장
	10.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나. 보고·검사 또는 질문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3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기후변화대응과	<p>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p> <p>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p> <p>나. 과태료처분 통지 등 부과 및 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 4항 및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 16조 	구청장
대기관리과	<p>1.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황함유 기준초과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 조치명령 및 황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사용 승인</p> <p>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조치명령 및 연료사용 승인</p> <p>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수리, 억제시설의 설치 조치 이행,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p> <p>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 시설의 신고수리, 배출 시설 또는 배출의 억제·방지시설 개선 등 필요조치 명령</p> <p>마.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승인</p> <p>바. 법 제82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p> <p>사. 청 문</p> <p>2. 측정대행업 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p> <p>가. 측정대행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p> <p>나.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p> <p>다. 등록취소시 청문</p> <p>라. 과태료 부과</p> <p>3.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과 관련된 다음의 사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제4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5호까지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7조 ○ 환경시험검사법 제28조 ○ 환경시험검사법 제29조 ○ 환경시험검사법 제35조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가.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p> <p>나. 시공감리자의 지정</p> <p>다.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p> <p>라. 등록취소시 청문</p> <p>마. 과태료 부과</p> <p>4. 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운행차의 수시점검(단, 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p> <p>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p> <p>다. 과태료의 부과·징수</p> <p>5.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p> <p>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p>	<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5호까지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15조</p> <p>○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p> <p>○ 환경기술산업법 제28조</p> <p>○ 환경기술산업법 제30조</p> <p>○ 환경기술산업법 제37조</p> <p>○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p> <p>○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70조의2</p> <p>○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p> <p>○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p> <p>○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p>	<p>구청장</p> <p>구청장</p>
<p>자원순환과</p>	<p>1. 폐기물처리 신고와 관련한 다음의 사무</p> <p>가. 폐기물처리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시설폐쇄 또는 폐기물 처리 금지 명령</p> <p>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p> <p>다. 업무에 관한 보고·자료의 제출명령,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의 검사</p> <p>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p> <p>마. 과태료의 부과·징수</p> <p>2.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허가, 변경허가, 허가 취소, 휴업·폐업 등의 신고</p>	<p>○ 「폐기물관리법」 제46조</p> <p>○ 「폐기물관리법」 제37조</p> <p>○ 「폐기물관리법」 제39조</p> <p>○ 「폐기물관리법」 제48조</p> <p>○ 「폐기물관리법」 제68조</p> <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4호까지 ‘건설폐기물</p>	<p>구청장</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나. 건설폐기물의 재위탁승인</p> <p>다. 과징금의 처분 등</p> <p>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완료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중지 명령 등</p> <p>마.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처리이행보증, 처리 명령, 처리 책임의 승계 및 조치 등</p> <p>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p> <p>사.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p> <p>아. 청문의 실시</p> <p>자. 과태료 부과·징수</p>	<p>법'이라 한다) 제21조·제22조·제25조 및 제33조</p> <p>○ 건설폐기물법 제23조</p> <p>○ 건설폐기물법 제26조</p> <p>○ 건설폐기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p> <p>○ 건설폐기물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p> <p>○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p> <p>○ 건설폐기물법 제31조</p> <p>○ 건설폐기물법 제57조</p> <p>○ 건설폐기물법 제66조</p>	
	3.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구청장
	4.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구청장
	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		
	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에의 공개 및 공개에 필요한 지원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생활환경과	1. 소음·진동규제의 벌칙 중 과태료 부과·징수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구청장
	2.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수집·운반법, 재활용업에 한함)		구청장
	가. 허가 및 변경허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나.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지시 및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1조	
	다.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라. 보고·검사 등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 관할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한강사업 본부장, 관할 공원녹지 사업소장

□ 행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인사과	1. 시의회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제63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시의회 사무처장
	가. 의회내 전보		
	나. 휴직에따른 복직		
	다. 1개월 이내의 교육 파견명령		
	라. 호봉승급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2. 시의회 소속 별정직·임기제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p> <p>3.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보조기관소속 5급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당해기관내 전보(4급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포함)내 전보당해 보조기관의 장</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4.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 포함)·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당해 기관내 전보</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5.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당해 기관내 전보</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p>	<p>○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제27조</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p> <p>○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제27조</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p>	<p>시의회 사무처장</p> <p>당해 보조기관의장</p> <p>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p> <p>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다. 호봉 승급		

□ 관광체육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체육진흥과	<p>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p> <p>나. 대중골프장의 병설</p> <p>다. 회원모집계획서 접수·처리</p> <p>라. 등록·변경등록 및 조건부등록</p> <p>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p> <p>바. 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통보</p> <p>사.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p> <p>아.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p> <p>자. 과태료 부과·징수</p>	<p>○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목까지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2조</p> <p>○ 체육시설법 제14조</p> <p>○ 체육시설법 제17조</p> <p>○ 체육시설법 제19조</p> <p>○ 체육시설법 제27조</p> <p>○ 체육시설법 제28조</p> <p>○ 체육시설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p> <p>○ 체육시설법 제36조</p> <p>○ 체육시설법 제40조</p>	구청장

□ 시민건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의료정책과	<p>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p> <p>나. 병원 등의 변경 허가</p> <p>다. 지도와 명령</p> <p>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 「의료법」 제33조제4항</p> <p>○ 「의료법」 제33조제5항</p> <p>○ 「의료법」 제59조제1항</p> <p>○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p>	<p>구청장</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가.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p> <p>나.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p> <p>3.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p> <p>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p> <p>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p> <p>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교부</p> <p>마. 사고마약류의 처리</p> <p>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p> <p>사. 마약류의 도·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p> <p>아. 출입·검사와 수거</p> <p>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p> <p>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리 명령</p> <p>카. 청문의 실시</p> <p>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p> <p>파.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p> <p>하.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하목까지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조</p> <p>○ 마약류관리법 제7조</p> <p>○ 마약류관리법 제8조</p> <p>○ 마약류관리법 제10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목까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p> <p>○ 마약류관리법 제12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하목까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p> <p>○ 마약류관리법 제13조</p> <p>○ 마약류관리법 제27조, 제29조</p> <p>○ 마약류관리법 제41조</p> <p>○ 마약류관리법 제42조, 제43조</p> <p>○ 마약류관리법 제44조</p> <p>○ 마약류관리법 제45조</p> <p>○ 마약류관리법 제46조 및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16조</p> <p>○ 마약류관리법 제50조 및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p> <p>○ 마약류관리법 제69조 및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9조</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4.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p> <p>나. 보고와 검사 등</p> <p>다. 폐기명령 등</p> <p>라. 검사명령</p> <p>마. 개수명령</p> <p>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p> <p>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p> <p>아. 과태료의 부과·징수</p>	<p>○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p> <p>○ 「약사법」 제69조</p> <p>○ 「약사법」 제71조</p> <p>○ 「약사법」 제73조</p> <p>○ 「약사법」 제74조</p> <p>○ 「약사법」 제76조의2</p> <p>○ 「약사법」 제81조</p> <p>○ 「약사법」 제98조</p>	구청장
	<p>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p> <p>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p> <p>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p> <p>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p> <p>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p> <p>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p> <p>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p> <p>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p> <p>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p>	<p>○ 「의료법」 제48조제1항, 「의료법 시행령」 제19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p> <p>○ 「의료법」 제48조제3항,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51조</p> <p>○ 「의료법」 제48조제3항,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p> <p>○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p> <p>○ 「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p> <p>○ 「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p> <p>○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p> <p>○ 「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p> <p>○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p>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p> <p>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p> <p>6.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p> <p>나.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허가</p> <p>다.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신고</p> <p>라. 응급환자 이송업 휴·폐업, 재개업신고</p> <p>마. 응급환자 이송업 지위승계 신고</p> <p>바. 과태료 부과·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51조 ○ 「의료법」 제49조제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구청장
식품안전과	<p>1. 축산물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허 가</p> <p>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사항</p> <p>다. 영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p> <p>라. 허가의 취소</p> <p>마. 과징금 처분</p> <p>바. 감독</p> <p>(1) 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p> <p>(2) 압류·폐기 또는 회수</p> <p>2.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p> <p>3. 농산물 원산지표시관련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29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8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또는 조사 4. 염 또는 함유제조의 허가·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등	법률」 제7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6조, 제57조	구청장
동물보호과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나. 시설변경 다. 등록증 재발급 라. 영업의 정지·등록의 취소 마.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 바. 업무감독 사.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아. 승계신고 자. 폐기 등의 조치 차. 청문	○ 「축산법」 제12조 ○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 「사료관리법」 제8조제3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 「사료관리법」 제25조 ○ 「사료관리법」 제26조 및 제36조 ○ 「사료관리법」 제27조 ○ 「사료관리법」 제8조제4항 ○ 「사료관리법」 제9조제3항 ○ 「사료관리법」 제24조 ○ 「사료관리법」 제30조	구청장 구청장

□ 안전총괄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설안전과	1.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규등록 등 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 수리 다. 등록의 갱정 라. 등록의 말소 등 마. 건설기계등록 원부의 보관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8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바.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및 변경·이전·말소등록 등 사. 등록증의 재교부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5.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기계 수시 검사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나. 검사의 최고 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라. 기간연장 6.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제1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8항 	<p style="text-align: center;">구청장</p> <p style="text-align: center;">구청장</p> <p style="text-align: center;">구청장</p> <p style="text-align: center;">구청장</p> <p style="text-align: center;">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보도환경개선과	1.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고속국도 및 시청앞 광장 제외) 가. 도로의 점용허가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다. 변상금의 부과·징수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 「도로법」 제61조 ○ 「도로법」 제66조 ○ 「도로법」 제72조 ○ 「도로법」 제117조	구청장
도로계획과	1.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허가	○ 「도로법」 제36조	구청장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2. 도로의 신설·확장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노폭 20m미만 도로의 신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나. 기존도로의 확장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 (단, 확장하여 노폭 20m이상이 되는 도로상의 입체교차시설, 교량 및 터널은 제외) 다. 기존 도로상의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의 설치 3.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 「도로법」 제31조 ○ 「도로법」 제81조	구청장 구청장

□ 도시계획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시계획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	○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구청장
토지관리과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인 경우 도로사업 등의 손실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및 제96조	구청장

□ 주택건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택정책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20조 및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6조	구청장
건축기획과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나. 검 사 다.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의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사항)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다목까지 ‘승강기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 승강기법 제21조 ○ 승강기법 제28조	구청장
임대주택과	1.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 및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안에서의 미매각 토지의 사용 등 허가와 토지관리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구청장
공동주택과	1.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 취소 등	○ 「주택법」 제15조, 제16조	구청장
	2.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 「주택법」 제43조, 제44조	구청장
	3.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무 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73조 ○ 「 공동주택관리법 」 69조1항	구청장
	4.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주택법」 제94조	구청장

□ 푸른도시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경과	1. 도로구역 내 녹지대(이하 이 란에서 “녹지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단,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대한문 앞)의 녹지	○ 「도로법」 제31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대, 자동차전용도로 녹지대는 제외)</p> <p>2.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대한문 앞)의 녹지대의 설치·관리</p> <p>3. 자동차전용도로의 녹지대의 설치·관리</p> <p>4. 도시계획시설 ‘녹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녹지의 설치 및 관리(서울특별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p> <p>나. 녹지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명령</p> <p>다. 녹지 점용료의 부과·징수(강제징수 포함)</p> <p>5.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녹지활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p> <p>나. 녹지활용계약 대상지 내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p> <p>6. 녹화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녹화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p> <p>나. 녹화지원 및 녹화계약 구역의 관리</p>	<p>○ 「도로법」 제31조</p> <p>○ 「도로법」 제31조</p> <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6호까지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36조</p> <p>○ 공원녹지법 제38조</p> <p>○ 공원녹지법 제41조, 제43조</p> <p>○ 공원녹지법 제12조</p> <p>○ 공원녹지법 제13조</p>	<p>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p> <p>도시기반시설본부장</p> <p>구청장</p> <p>관할 공원녹지사업소장, 구청장</p> <p>구청장</p>
자연생태과	<p>1. 방제명령 등</p> <p>2.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관리(지정·해제 및 그 고시는 제외)</p> <p>3.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 등</p> <p>나. 지정서 교부</p>	<p>○ 「산림보호법」 제24조제2항, 제3항</p> <p>○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p> <p>○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제2항</p> <p>○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3항</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다. 지정 취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	

□ 물순환안전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물재생계획과	1. 공공하수도 설치인가(간선 하수도 및 2 이상의 구에 걸치는 하수도 제외)	○ 「하수도법」 제11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	구청장
물재생시설과	1. 허가의 취소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 제30조	물재생센터 소 장
	2. 장부의 기록·보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 제68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9조	물재생센터 소 장
	3. 점용허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 제24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19조	물재생센터 소 장
	4. 배수설비의 설치 등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 제27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물재생센터 소 장
	5. 제해시설의 설치 등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 제23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18조	물재생센터 소 장
	6. 배수설비 등의 검사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 제31조	물재생센터 소 장
	7. 방류수수질기준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 제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물재생센터 소 장
하천관리과	1. 국가하천 및 청계천 제외지를 제외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하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의 접수 수리 나.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보관 등본의 교부·열람,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사항 다. 하천시설의 관리·점용 사항 등의 점검, 유지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 조치 라. 하천수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마.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나 유지·관리의 허가 및 이에 따	○ 「하천법」 제5조 ○ 「하천법」 제15조 ○ 「하천법」 제14조 ○ 「하천법」 제52조 ○ 「하천법」 제30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르는 조치</p> <p>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의뢰 등 조치</p> <p>사.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고시 등 이에 따른 조치</p> <p>아.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p> <p>자.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에 따 르는 조치</p> <p>차.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그 밖의 납 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카.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타.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파. 하천관리원의 임명. 하천법 및 하천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p> <p>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거 나 사업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물건 및 서류 등의 검사</p> <p>거. 하천의 사용금지·제한 및 이에 따른 공고 등</p> <p>너. 원상회복의무 조치, 면제, 면제통보, 비용의 예치 및 당 해 공작물 등의 국유화 조치</p> <p>더. 하천구역 등의 지정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 한 협의</p> <p>러.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머.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이에 따르 는 조치</p> <p>버. 폐천부지(국유지 제외) 등의 교환 및 양여</p> <p>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p> <p>어. 「하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이에 따르는 처분</p> <p>2. 국가하천을 포함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청계천 제외되는 제외한다)</p> <p>가.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p>	<p>○ 「하천법」 제30조</p> <p>○ 「하천법」 제33조</p> <p>○ 「하천법」 제36조</p> <p>○ 「하천법」 제38조</p> <p>○ 「하천법」 제68조</p> <p>○ 「하천법」 제69조</p> <p>○ 「하천법」 제70조</p> <p>○ 「하천법」 제72조</p> <p>○ 「하천법」 제90조</p> <p>○ 「하천법」 제47조</p> <p>○ 「하천법」 제48조</p> <p>○ 「하천법」 제76조</p> <p>○ 「하천법」 제77조</p> <p>○ 「하천법」 제78조</p> <p>○ 「하천법」 제84조, 제85조, 제86조</p> <p>○ 「하천법」 제91조</p> <p>○ 「하천법」 제98조</p> <p>○ 「하천법」 제27조</p>	<p>구청장(다만 한강은 한강 사업본부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하천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다. 점용료 등의 감면 라. 하천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및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마. 하천에서의 야영·취사 또는 낚시금지구역 지정 3. 하천 국유화에 따른 조치 (지목변경, 등기말소의 촉탁 관리청 명칭 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법」 제37조 ○ 「하천법」 제37조 ○ 「하천법」 제67조 ○ 「하천법」 제46조 ○ 같은법 제10조제6항 	구청장

□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예방과	1.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나. 과징금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32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소방서장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지위승계 신고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마. 과징금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름까지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9조 ○ 소방시설법 제31조 ○ 소방시설법 제32조 ○ 소방시설법 제34조, 제44조 ○ 소방시설법 제35조
	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소방서장
	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가.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과태료의 부과 징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신·구 조문 대비표

사무위임 조례 신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경제진흥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민생경제과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공산품의 개선, 수거, 파기명령 등 나. 공산품의 보고 및 검사 등 <신설>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2조 <신설>	구청장 <신설>

경제진흥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민생경제과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공산품의 개선, 수거, 파기명령 등 나. 공산품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및 별표3	구청장

도시교통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버스정책과	<신설>	<신설>	<신설>

도시교통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버스정책과	11. 차량의 연장 (차량연장에 관한 고시는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법」 제8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또는 면허의 취소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이하생략>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구청장		12. (현행과 같음) <이하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택시물류과	4.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 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외) 13.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 <신설>	○ 여객자동차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신설>	구청장 구청장 <신설>		<삭제> 12.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 라.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처분	<삭제> ○ 화물자동차법 제56조의2	<삭제> 구청장

기후환경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녹색에너지과	10.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고·검사 또는 질문 나. 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0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9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 「전기용품안전 관리	구청장

기후환경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녹색에너지과	10.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나. 보고·검사 또는 질문 다. (현행과 같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전기용품 및 생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법 제28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3	
기후변화 대응과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사무 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정화설비 또는 환기 설비의 개선 등 필요 조치의 명령,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보완명령, 이행 확인 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현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 다. 과태료처분 통지 등 부과 및 징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다목까지 '실내 공기질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다목까지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9조 ○ 실내공기질법 제13조 및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제12조 ○ 실내공기질법 제16조 제3항 및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3	
기후변화 대응과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사무 <삭제> 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현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 나. 과태료처분 통지 등 부과 및 징수	<삭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4항 및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16조	구청장 <삭제>

시민건강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보건의료정책과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차. 청산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타.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 「의료법」 제51조 ○ 「의료법」 제49조제3항, 「의료법 시행규	구청장

시민건강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보건의료정책과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삭제>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삭제> ○ 「의료법」 제51조 ○ 「의료법」 제49조 제3항, 「의료법	구청장 <삭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칙」 제60조, 제61조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 안전총괄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건설안전과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구청장

□ 안전총괄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건설안전과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구청장

□ 주택건축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택정책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 「임대주택법」 제14조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구청장
공동주택과	1.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 「주택법」 제16조	구청장
	2.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 「주택법」 제24조	구청장
	3.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무 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	○ 「주택법」 제56조제1항·제2항 ○ 「주택법」 제57조제1항	구청장

□ 주택건축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택정책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구청장
공동주택과	1.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 취소 등	○ 「주택법」 제15조, 제16조	구청장
	2.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 「주택법」 제43조, 제44조	구청장
	3.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무 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 「공동주택관리법」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4.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주택법」 제91조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4.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69조1항 ○ 「주택법」 제94조	구청장

□ 물순환안전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하천관리과	1. 국가하천 및 청계천 제외지를 제외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자. 고시된 하천예정지와 연안 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 제38조	구청장
	차. 과오납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 제68조	
	서. 허가수수료의 징수·감면	○ 「하천법」 제89조	
	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	○ 「하천법」 제91조	
	저. 「하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에 따르는 처분	○ 「하천법」 제98조	

□ 물순환안전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하천관리과	1. 국가하천 및 청계천 제외지를 제외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자.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 제38조	구청장
	차. 잘못 납부 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 제68조	
	<삭제>	<삭제>	<삭제>
	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	○ 「하천법」 제91조	
	어. 「하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에 따르는 처분	○ 「하천법」 제98조	